

【정관】

제정 : 2021. 11. 2.

1차 개정 : 2024. 3. 28.

전문

경영활동의 궁극적 목적으로 구성원의 지속적 행복을 추구하고, 구성원은 주주의 장기적 가치와 이해관계자의 행복이 지속 가능하도록 기여한다. 이를 회사의 경영철학에 다음과 같이 정립하고 경영활동의 근간으로 삼아 실천한다.

구성원이 지속적으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터전이자 기반인 회사는 안정과 성장을 지속적으로 이루어 영구히 존속·발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구성원은 구성원 행복과 함께 회사를 둘러싼 이해관계자 행복을 동시에 추구해 나간다. 이해관계자 행복을 위해 창출하는 모든 가치가 곧 사회적 가치이다.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해 경제적 가치를 키워나가며, 이해관계자와 신뢰 관계를 발전시켜 나간다.

고객에게 다양한 가치를 제공하고 고객을 지속적으로 만족시켜 신뢰를 얻으며, 궁극적으로 고객과 더불어 발전한다.

비즈니스 파트너와 함께 공정하고 경쟁력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에 기반한 선순환적 협력을 통해 상호 발전을 이끌어 나간다.

주주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하여 기업가치를 높여 나간다.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환경보호, 고용창출, 삶의 질 제고, 지역사회 기여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여 사회와 더불어 성장한다.

모든 구성원은 이해관계자 간 행복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며,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도록 현재와 미래의 행복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제 1 장 총 칙

제1조 (상호)

이 회사는 "SK스퀘어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라 하며, 한글로는 에스케이스퀘어 주식회사라고 영문으로 SK Square Co., Ltd.로 표기한다.

제2조 (기업지배구조헌장)

회사는 투명하고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이에 관한 회사의 의지와 실천 방안을 담은 기업지배구조헌장을 마련하고 이를 발전시켜야 한다.

제3조 (목적)

- ① 회사는 투자사업의 합리적 경영과 발전을 도모하며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공공복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② 회사는 전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자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 소유함으로써 자회사 등(손자회사 및 해당 손자회사가 지배하는 회사 포함)의 제반 사업내용을 지배·경영 관리하는 지주사업
 2. 국내외 자회사, 투자회사에 대한 출자 및 자금 지원,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등 관리 업무
 3. 자회사 등과 상품 또는 용역의 공동개발·판매 및 설비·전산 시스템 등의 공동활용 등을 위한 사무지원 사업
 4. 브랜드 및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의 관리 및 라이센스업
 5. 시장조사, 경영자문 및 컨설팅업
 6. 창업 및 신기술 관련 투자, 정보 및 서비스 제공, 알선 등 창업 지원 및 신기술 관련 투자 사업
 7. 부동산업(개발, 관리, 임대 등) 및 동산 임대업
 8. 전 각호를 위하여 관련된 연구 및 기술개발
 9. 기타 전 각호의 목적달성에 부수 또는 수반되거나 직접, 간접으로 회사에 유익한 기타 투자 및 부대사업
- ③ 회사는 전항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의 일부를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위탁할 수 있다.

제4조 (본사 및 지사)

회사의 주된 사업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제5조 (공고방법)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ksquare.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제 2 장 주식

제6조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4 억 3 천만주로 한다.

제7조 (일주의 금액)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일백원으로 한다.

제8조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기명식 보통주식 141,467,571 주로 한다.

제9조 (주식의 종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제10조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11조 (신주인수권)

①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2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 1 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회사의 주주 포함)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2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 1 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회사의 주주 포함)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 ② 제 1 항 제 3 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③ 제 1 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④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⑤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⑥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외증권발행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를 발행하는 경우에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2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주인수권의 결정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다.
- ⑦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 요건 또는 규제를 충족하거나 투자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또는 자회사를 편입하거나 자회사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자회사 또는 다른 회사의 주주들로부터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을 현물출자 받는 경우에는 당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자(회사의 주주 포함)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제12조 (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는 배당 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 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제13조 (주식매수선택권)

- ① 회사는 임직원 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이하 본 조에서 "임직원"이라 한다)에게 관계법령이 정하는 한도까지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관계법령이 정하는 한도까지 임직원에게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임직원은 회사의 이윤극대화나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임직원으로 하되 관계법령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수 없는 자로 규정한 임직원은 제외한다.
-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 ④ 임원 또는 직원 1 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 을 초과할 수 없다.
- ⑤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7 년의 범위내에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정한 기간동안 행사할 수 있다.
- ⑥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당해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로부터 3 년 이내에 임의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당해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3.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4조 (명의개서 대리인)

- ①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업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의결로 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 ③ 회사는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를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대행케 한다.
- ④ 제 3 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에 관한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15조 (주주명부 작성·비치)

- ① 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명세를 통지받은 경우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에 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회사는 전자문서로 주주명부를 작성한다.

제16조 (기준일)

- ① 회사는 매 결산기 최종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로 하여금 정기주총 시 그 권리를 행사하게 한다.
- ②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2 주간 전에 공고한 후 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

제 3 장 사채

제17조 (전환사채의 발행)

-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4,000 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제 1 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후 1 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⑤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회사는 전환 전에 지급시기가 도래한 이자에 대하여만 이자를 지급한다.(2024. 3. 28. 본 항 개정)

제18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4,000 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후 1 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⑤ (2024. 3. 28. 삭제)

제19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 14 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20조 (사채의 발행)

-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21조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다만, 사채의 경우 법령에 따라 전자등록이 의무화된 상장사채 등을 제외하고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 4 장 주주총회

제22조 (주주총회의 구분)

- ①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 ② 정기총회는 회사의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23조 (소집)

-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 ② 대표이사의 유고 시에는 제 40 조 제 2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 (소집통지 및 공고)

-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 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간하는 한국경제신문과 매일경제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함으로써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25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사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26조 (의장)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되고 대표이사가 유고 시에는 사전에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의장이 된다.

제27조 (의장의 질서유지권)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언행을 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에 대하여 발언의 정지, 취소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을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8조 (의결권)

주주총회에서의 주주는 자기명의로 등록된 주식 일주마다 일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제29조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회사, 모회사와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 분의 1 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30조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

- ①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이를 통일하지 아니하고 행사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 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 (의결권의 행사)

- ① 주주는 대리인에 의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② 대리인은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주주총회 개시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 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33조 (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사와 지사에 비치한다.

제 5 장 이사

제34조 (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4 인 이상 12 인 이하로 하며 전체 이사 수의 과반수의 사외이사를 둔다.

제35조 (이사의 선임)

-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 분의 1 이상의 수로 한다.

제36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①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이사회 내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둔다.
- ② 사외이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임한다.

- ③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한다.
- ④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37조 (이사의 자격)

-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회사의 이사가 될 수 없으며, 이사가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 1.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를 지배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상 동일인 및 그 동일인 관련자(단, 회사와 동종영업을 영위하는 회사라 할지라도 회사와 공정거래법상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로 보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
 - 2.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 및 그와 공정거래법 상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임직원 또는 최근 2년이내에 임직원이었던 자
 - 3.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2대주주인 회사 및 그와 공정거래법 상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임직원 또는 최근 2년이내에 임직원이었던 자
- ② 회사의 사외이사는 경영, 경제, 회계, 법률 또는 관련기술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회사의 발전과 주주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상법, 기타 관련 법령 상 사외이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 ③ 회사의 사외이사가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그 직을 상실한다. 이때 결원이 생긴 사외이사는 그 사유가 발생한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제38조 (이사의 임기)

- ①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개최되는 제3차 정기주주총회의 종료시에 만료된다.
- ② 사외이사의 총 임기는 6년 또는 계열회사에서 재직한 기간을 더하여 9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39조 (이사의 결원과 보선)

- ①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원으로 본다.
 - 1. 사망한 때
 - 2. 파산이 선고된 때
 - 3.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이 개시된 때
 -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된 때
- ② 이사가 결원되었을 때는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보궐선임한다. 그러나 법정원수가 되고 또한 업무집행 상 지장이 없을 때에는 보궐 선임을 유보 또는 다음 정기주주총회 시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③ 보결과 증원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취임한 날로부터 제 38 조 제 1 항의 임기를 기산한다.

제40조 (이사의 직무)

- ① 회사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이사 중에서 대표이사 1 인 이상을 선임하며,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사내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 유고 시에는 이사회규정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1조 (이사의 보고의무)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42조 (이사의 충실의무)

이사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 충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43조 (직원의 신분보장)

회사의 직원은 인사규정으로 정하는 면직사유 또는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신분을 보장한다.

제44조 (대리인)

대표이사는 법령이나 정관으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직원 중에서 회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 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45조 (고문 등)

대표이사는 회사의 업무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고문이나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제 6 장 이사회

제46조 (구성)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회사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제47조 (이사회의 소집)

- ①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이사 3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 ②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 개최 2일전까지 회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각 이사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 ④ 이사회는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3항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48조 (이사회의 의결방법)

- ① 이사회의 의결은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② 이사회의 결의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49조 (내부거래절차)

공정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 간 거래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내부거래절차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에서 제·개정한다.

제50조 (운영)

이사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규정으로 정한다.

제51조 (감사위원회)

- ① 회사는 이사회 내에 감사위원회를 둔다.
-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한다.
- ③ 감사위원회의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 ④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제52조 (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사유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사에 비치한다.

제53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제54조 (사외이사의 처우)

사외이사에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7 장 계산

제55조 (사업연도)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6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등)

- ①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 ②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 ③ 감사위원회는 제 1 항의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4 주간 내에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대표이사는 제 1 항 각 호의 서류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사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 ⑤ 대표이사는 제 1 항 각 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57조 (잉여금의 처분)

회사는 매 사업연도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 법정적립금
3. 주주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임원상여금

6. 기타 이익잉여금처분액
7. 차기이월이익잉여금

제58조 (이익배당)

- ① 이익의 배당은 주주에게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배당할 신주의 종류를 결정할 수 있다.
- ③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제 1 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 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2024. 3. 28. 본 항 개정)
- ④ 제 1 항의 배당금은 지급개시한 날로부터 5 년안에 그 지급청구가 없을 때에는 그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이를 회사의 소득으로 처리한다.

제59조 (중간배당)

- ① 회사는 사업연도 중 1 회에 한하여 이사회 결의로 상법 제 462 조의 3 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2024. 3. 28. 본 항 개정)
- ②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제 1 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 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2024. 3. 28. 본 항 개정)
- ③ 제 1 항의 배당금에 관하여 금액 한도, 지급 시기 등 제반 사항은 상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다.(2024. 3. 28. 본 항 개정)
- ④ 제 1 항의 배당금에 관하여 제 58 조 제 4 항을 준용한다.(2024. 3. 28. 본 항 신설)

제 8 장 보칙

제60조 (비밀엄수의 의무)

- ① 회사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에 관하여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안 된다.
- ② 회사의 임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가 경영에 관한 사항을 임의로 외부에 누설하거나 도용하는 경우에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부 칙<제정(2021. 11. 2.)>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이 회사의 설립등기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 이후 최초의 사업연도) 정관 제 55 조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 설립 이후 최초의 사업연도는 회사설립일로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3조 (설립 이후 최초의 명의개서대리인)** 정관 제 14 조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 설립 이후 최초의 명의개서대리인은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 한다.
- 제4조 (설립 이후 최초의 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등의 선임)** 정관 제 35 조, 제 36 조, 제 40 조 및 제 51 조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 설립 이후 최초의 대표이사, 이사,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은 분할회사의 분할계획서에 포함하여 분할계획서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을 통하여 선임한다.
- 제5조 (설립 이후 최초 사업연도의 이사의 보수)** 정관 제 53 조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 설립 이후 최초 사업연도의 이사의 보수는 분할회사의 분할계획서에 포함하여 분할계획서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을 통하여 정한다.
- 제6조 (설립 이후 최초의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의 제정)** 정관 제 53 조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 설립 이후 최초의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은 분할회사의 분할계획서에 포함하여 분할계획서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을 통하여 정한다.

부 칙<변경 제 1 호(2024. 3. 28.)>

-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4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58 조(이익배당)의 개정내용은 2024년 회계연도(제 4 기) 결산배당부터 적용한다.